NO.2011-ETC-06

KR
KOREAN REGISTER OF SHIPPING

TECHNICAL
INFORMATION

90 Gajeongbukro, 23-7
Jang-dong,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Phone : +82-42-869-9344
Fax : +82-42-862-6098
E-mail : kr-clt@krs.co.kr
Date : 13 July 2011
Person in charge : Kim Jae-Joong

Subject :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

우리 선급에 등록된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 시험 및 측정에 대한 수락/인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점검서비스부터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은 장비의 전문가들이 점검, 보수를 수행함으로써 선박의 안전 향상과 신속하고 원활한 검사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은 협약에 의한 정기적 검사 또는 임시 검사와 동시에 시행되어 선급검사원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기적 검사 3개월 이내에 선급검사원의 입회없이 작성된 전문공급자의 점검 보고서를 인정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기적 검사 전 조기 작성된 점검 보고서가 차기 검사시 까지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PSC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간혹 이러한 인정이 오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승인된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 보고서의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변경된 점검인정기준

2.1 등록된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서비스는 **협약의 정기적 검사 또는 임시 검사와 같은 검사 기간 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같은 검사 기간 내에 시행되지 않은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제외됩니다.

.1 구명뗏목 연차 개방검사
.2 EPIRB의 매 5년 주기 육상시험
.3 각종 가스 실린더 및 에어 실린더에 대한 5년 또는 10년 주기의 수압시험
.4 방수복에 대한 주기적인 공기압 시험

2.2 선급 이전에 따른 검사(TOC)가 정기적 검사 윈도우를 벗어난 시기에 시행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2.2.1 선박의 국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무선설비 점검 (SR inspection)을 제외한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2.2 선박의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 이전 IACS 선급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서비스가 금번 TOC 검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된 경우는 **무선설비 점검 (SR inspection)을 제외한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2.3 어떠한 경우에도 **승인된 전문공급자에 의한 무선설비점검 (SR inspection)은 TOC 검사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3. '같은 검사 기간 내'의 의미

- 본문에서 언급된 '같은 검사 기간 내' 라고 함은 신청된 정기적 검사의 시작일로부터 완료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 선주 주의사항

- 협약의 정기적 검사와 같은 검사 기간 내에 전문공급자의 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공급자를 수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검사 기간 내에 시행될 수 없다면, 협약의 정기적 검사는 연차일이 변경되지 않는 지정일 전후 3개월 범위 내에서 검사종류별 (SC, SE, SR, IOPP 등)로 분리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검사를 분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5. 선급 검사원 주의사항

- 전문공급자의 점검이 협약의 정기적 검사와 같은 검사 기간 내에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검 시행시 가능한 입회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섭

정부대행검사본부장
한 국 선 급

배부처 : 검사원, 선주, 전문공급자